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가. 제안이유

- 1)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1주기(15학년도 ~ 17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 2)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전과의 기회를 주고자 함.
- 3)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1216(2014.03.25.)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 알림 및 현황조사”의 창업친화적 학사 운영 과정을 도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대계열 구분 정리(교육부 표준분류 체계 지침에 의거), 15학년도 실용음악과 폐과, 16학년도 사회복지과 32명감원, 미용피부과 10명 감원, 식품영양과 10명 감원
- 2)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2년제 학과의 전과시기를 2학년 1학기까지 확대코자 함.
- 3) 창업 활동 (동아리, 창업현장실습, 창업 등) 에 대해 학교에서 지원하기 위한 창업휴학제 및 학점인정제 도입.

다. 주요토의과제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 2) 예산조치 :
- 3) 합 의 : 교무위원회 의결, 실용음악과 학과 교원 협의 완료,
- 4)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별첨)

【별첨】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현행	개정 (안)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계열 변경 사항> <table><tr><td>의료관광코디과</td><td>자연과학</td></tr><tr><td>외식조리과</td><td>인문사회</td></tr></table>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table><tr><td>실용음악과</td><td>예·체능</td><td>30</td></tr></table> <201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table><tr><td>사회복지과</td><td>인문사회</td><td>130</td></tr><tr><td>미용피부관리과</td><td>자연과학</td><td>80</td></tr><tr><td>식품영양과</td><td>자연과학</td><td>50</td></tr></table>	의료관광코디과	자연과학	외식조리과	인문사회	실용음악과	예·체능	30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130	미용피부관리과	자연과학	80	식품영양과	자연과학	50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table><tr><td>의료관광코디과</td><td>인문사회</td></tr><tr><td>외식조리과</td><td>자연과학</td></tr></table> <table><tr><td>실용음악과</td><td>예·체능</td><td>0(폐과)</td></tr></table> <table><tr><td>사회복지과</td><td>인문사회</td><td>98</td></tr><tr><td>미용피부관리과</td><td>자연과학</td><td>70</td></tr><tr><td>식품영양과</td><td>자연과학</td><td>40</td></tr></table>	의료관광코디과	인문사회	외식조리과	자연과학	실용음악과	예·체능	0(폐과)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98	미용피부관리과	자연과학	70	식품영양과	자연과학	40
의료관광코디과	자연과학																																
외식조리과	인문사회																																
실용음악과	예·체능	30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130																															
미용피부관리과	자연과학	80																															
식품영양과	자연과학	50																															
의료관광코디과	인문사회																																
외식조리과	자연과학																																
실용음악과	예·체능	0(폐과)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98																															
미용피부관리과	자연과학	70																															
식품영양과	자연과학	40																															
제27조(전과) 전과는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초에, 3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하다.	제27조(전과) 전과는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에, 3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하다.																																
제2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2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228)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여학생 포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학점인정) ⑨ 창업관련학점인정 : < 신 설 >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228)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여학생 포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휴학은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업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4조(학점인정) ⑨ 창업관련학점인정 : 창업관련학점 인정은 6~18학점(2년제:6학점이내, 3년제:12학점이내, 4년제:18학점이내)으로 하며, 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